# 古文書 吏讀 硏究의 回顧와 展望

朴盛鍾*

要約

한국에서 고문서라 할 때에는 그 下限 연대를 1894년 또는 1910년 중의 어느 하나로 잡는 것이 보편적이다. 전자는 甲午改革 과정에서의 議案과 公文式 규정을 분수령으로 삼는 견해로서 비교적 널리 수용되고 있다. 후자의 견해는 議案과 公文式에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서상의 변화는 1910년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정 및 실제와 관련된 사항 중 두어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약술하였다.

갑오개혁까지의 한국의 현존 각종 고문서의 수효는 어림잡아 500만 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효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私家를 비롯해 여러 소장처에 소장되었으나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합친 것이다. 吏讀는 일정한 양식의 고문서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각종 謄錄을 비롯하여 帳簿 및 臺帳,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종류의 기록류들에도 사용되었다. 이 중 고문서를 대상으로 그 안에 쓰인 이두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훑어보고자 한 것이 본고의 주 목표이다. 이에 따라 그간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주요 문서 4점에 대하여 논란 거리를 중심으로 연구사적인 기술을 하였다. 대상 고문서는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년)와 修禪社乃老宣傳消息(一

* 關東大學校 國語敎育科

名 松廣寺奴婢文書)(1281년), 長城監務關字(1407년) 및 正倉院藏 第二新羅帳籍이었다. 최근 새롭게 소개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墨書紙片에 대한 것은 본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또한 고문서 이두 연구는 원자료에 충실하게 접근하여 문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그 안에 쓰인 이두의 용법을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두의 讀音을 비롯해 이론적 뒷받침은 물론 각종 이두 자료들에 대한 색인 작업도 요청된다고 보았으며, 學際間 연구를 비롯해 연구 시야를 넓히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핵심어 : 吏讀, 吏讀 硏究史, 고문서 이두,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修禪社乃老宣傳消息(松廣寺奴婢文書), 長城監務關字, 第二新羅帳籍

## 1. 머리말

### 1.1. 古文書의 下限 年代

한국에서 고문서라 할 때 그 시대의 下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통용되는데, 하나는 1894년 甲午改革까지의 문서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1910년 日帝에 併合되는 시점까지의 문서를 지칭하는 것이다.

1894년 甲午改革은 제도와 법령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기록 및 문서 관리 면에서도 그 이전 시기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前近代와 近代로 나누는 것이 통례이다. 1894년을 新舊 文書의 전환점으로 본 견해는 『新式儒胥必知』(1901년)의 黃泌秀 서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儒胥必知之爲書也 類纂公文文字之關於儒胥者 甲午以前 凡爲儒胥者 苟有事於公文 不得不以是爲則 一自更張以後 文字體制 亦隨而變 以苦前日之龜鑑便爲此時之弁髦 (『儒胥必知』는 서적으로서 공문과 문서를 유별하여 편찬하는 일은 儒者와 胥吏에게 중요한 일이다. 갑오년 이전에 무릇 儒胥가 公文을 작성할 것 같으면 이 책(『儒胥必知』)을 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으나, 한결같이 更張 이후에는 문서의 체제가 따라 변함으로 말미암아 전일의 귀감이 어느새 지금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 괴롭게 여긴다.)

그런데, 갑오개혁의 근대적 성격을 언어와 문자 사용의 측면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서는 의사전달 체계의 한 산물이므로 언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는 일이 요청된다. 사용된 언어가 무엇인지, 이질적 언어 요소들의 유무, 문장의 종류와 스타일, 어휘체계와 표기법상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사항들이 눈여겨 볼 만하다.

(1) 1894년 7월 8일 議案[1)]
凡國內外公私文字 遇有外國國名地名人名之當用歐文者 俱以國文繙譯施行事 (무릇 國內外의 公私文書에 歐文으로 常用되는 外國의 國名 地名 人名이 있는 경우 모두 國文으로 繙譯 施行할 것)

(2) 1894년 11월 21일 勅令 第1號 公文式
第14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써 근본을 삼고 漢文을 덧붙여 번역하거나 혹은 國漢文을 혼용한다.)

(3) 1895년 5월 8일 公文式 改正件
제9조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써 本을 삼되, 漢譯을 附ᄒᆞ며 혹은

1) 이하 議案과 勅令 등은 『議案·勅令』(서울대 규장각, 1991년)에 영인 수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金建佑(2007: 36-41)도 참고된다.

國漢文을 混用홈

위 (1)은 軍國機務處에서 제정하여 반포한 議案으로서 외국의 고유명사들을 모두 국문으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인데, 漢文과 吏讀文을 주종으로 해 오던 문서의 언어를 국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곧 이어 반포된 (2)의 칙령 제1호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후 朴泳孝·金弘集 내각 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과 칙령을 모두 국문으로 근본을 삼는다고 천명함으로써 자주적인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 官報에서는 洪範14條의 誓告文과 綸音을 純漢文體·純國文體·國漢文混用體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게재하기도 하였다. 법령과 명령 등의 기록과 문서에서 국문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정신은 (3)에서 보듯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2)와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로부터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문서의 언어로 군림하여 왔던 漢文과 吏讀文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公文式에서 국문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문과 이두를 사용하던 관행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朴喜淑(1987)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895년 閏5月 江陵郡守 李會源의 所志 2점만 하더라도 國文과 漢文, 吏讀가 혼용된 '國漢吏文混用體'로 사용되었다. 즉, "……矣段은矣身이猝然니身病을得ᄒᆞ와……"라는 식의 문장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갑오개혁을 통해 비록 "공문식과 재판소구성법 등을 반포하여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였으나, 국민은 물론 제정자조차도 법령의 내용을 모르는 홍수입법의 시기이었다"(鄭肯植 2002: 43)는 면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이로 말미암아 1908년에도 순한문이나 이두 또는 외국문자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시정을 요하는 규정이 거듭 공포되었고, 官報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게재되기도 하였

다.[2] 그러므로 갑오개혁 이후에 公私文書의 서식이 新式으로 바뀌긴 했으나 정치 및 사회 등 각 분야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보아, 1910년의 한일합방 때까지는 이전 시대의 연장으로 보고 고문서의 하한 연대 역시 이 때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된다(崔承熙 1989: 22 참조).

본고는 고문서에 쓰인 이두에 대한 그간의 연구 중에서 논의할 만한 것들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와 전망을 언급하는 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고문서의 하한 연대를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로 잡는 입장을 취한다.

## 1.2. 古文書와 吏讀

현전하는 고문서의 총 수효를 어림잡기는 쉽지 않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사 및 정리한 고문서는 100만 점을 훨씬 웃돌며, 『古文書集成』 90여 책을 이미 간행한 바 있다(安承俊 2007: 77). 국립중앙도서관에 약 3만 점, 서울대 규장각에 5만 여 점이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국학진흥원이 기탁 받은 문서는 2007년 6월 현재 94,088점(이욱 2007: 53)이며 이 밖에도 전북대 박물관과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등에서도 각각 수만 점씩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전하는 私家의 고문서는 약 300만 점으로 추산되므로(鄭求福 2002: 머리말 iv), 현전 고문서의 총 수효는 대략 500만 점을 웃돌지 않을까 추정된다. 현전 고문서 중 吏讀文으로 작성되었거나, 吏讀가 포함된 문서들의 수효 역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16세기 고문서 약 1,400점 중 이두문으로 작성되었거나 이두가 포함된 문서들은 대략 80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본다(朴盛鍾

2) 예컨대, 1908년 2월 6일자 官報 3990 "官廳事項" 참조.

2005 참조). 16세기 고문서의 경우에 의존하여 따져 보자면, 현전 고문서 중 이두가 쓰인 문서는 줄잡아 약 300만 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두의 쓰임은 고문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각종 謄錄이다. 謄錄은 행정 관아에서 주고 받은 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문서의 형식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약하는 방식으로 편집한 것이다. 등록에는 원문서뿐만 아니라 간혹 王命이나 啓辭 등을 함께 수록하기도 한다. 현존하는 등록은 거의 대부분 조선후기의 것이다.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 등록의 경우, 작성 관아는 議政府·備邊司·宗親府·宗府寺·忠勳府·義禁府·吏曹·禮曹·兵曹·工曹·奎章閣·司憲府·각 軍營·각 관청의 屬司 등을 망라하고 있다(金赫 2002 참조). 지방 관아에서 작성된 등록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 등록은 원문서가 아니므로 이용에 다소 주의를 요하긴 하나, 관련 사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두의 용례 또한 풍부하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자료이다. 謄錄과 유사한 성격의 자료로서 각종 受敎 또한 중요한 의의를 지님은 두 말할 나위 없다.

帳簿 또는 臺帳의 성격을 지닌 것들에도 이두가 사용되었다. 죄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推案과 鞫案, 시체를 조사한 기록인 檢案을 비롯하여 토지측량의 결과를 기록한 量案, 그리고 戶籍 등에도 質과 量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두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記錄類에 속하는 것들에도 이두가 사용되었는데, 각종 事目과 節目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고대 이두 자료 중에는 현재 활발히 발굴 소개되고 있는 木簡들처럼 단순한 기록 또는 표찰의 성격을 띤 것들 중에 吏讀 또는 吏讀的 요소가 들어 있기도 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고문서 이두 연구 경향과 흐름을 더듬어 보고 앞으로의 과제 및 전망 등을 가늠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대상 고문서들을 문서의 각종 요건을 두루 잘 갖춘 것들만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고대의 이른 시기 이두에

대한 연구들을 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사 동향 파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각종 謄錄을 비롯하여 帳簿 및 臺帳類에 쓰인 이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매우 소략하므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記錄類를 포함하여 이들을 일단 대상 고문서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두가 쓰였다 하더라도 金石文과 典籍의 경우는 논외로 한다.

## 2. 古文書 吏讀 硏究의 回顧

필자는 19세기말에서 현재까지의 吏讀 연구에서 고문서를 어느 정도 활용했는가의 관점에서 時期를 다섯으로 나누어 본 적이 있다(朴盛鍾 2006ㄴ). 즉, ① 19세기 말~20세기 초, ② 일제강점기 (1910년~1945년), ③ 1945년~1970년대, ④ 1980년대~2000년, ⑤ 2001년~현재와 같이 나누었다. 이 중 제①기의 이두 연구에서는 고문서를 활용하지 못했으나, 일본인 연구자들은 서양 선교사들과는 달리 이두의 正體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제②기에는 일본인들이 고문서를 적극 수집하였으며, 『鄕歌及び吏讀の硏究』와 같은 연구물에서는 고문서를 적극 활용하여 이두 연구를 진척시켰다. 제③기에는 고문서 이두 연구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제④기에는 『慶北地方古文書集成』·『韓國古文書硏究』·『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朝鮮前期古文書集成』과 같은 고문서 자료집 및 古文書學 전문서적의 편찬, 그리고 새 자료의 발굴 등에 힘입어 고문서 이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吏讀硏究』(2000)가 그 중의 대표적인 예이다. 제⑤기에는 吏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상 문헌과 자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와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고문서의 이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를 보인 것이 주로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고문서 몇 점에 국한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2.1.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년)

이 문서[3]는 현재 경상북도 漆谷郡 若木面에 있던 淨兜寺의 五層石塔의 건립과정을 1031년에 기록한 形止記로서, 1905년 경부선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탑 속의 鍮合 안에 墨書가 기입된 종이 형태로 발견된 것이다. 이것이 『朝鮮古蹟圖譜』 卷6(1918년)에 실림으로써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당시의 현존 고문서로는 가장 오랜 것이므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찍이 金澤庄三郎(1918)이 전문을 판독 해석한 이래 前間恭作(1926)과 鮎貝房之進(1934ㄴ: 上編)이 그 뒤를 이어 전문을 해독하였으며, 홍기문(1957)과 高正儀(1987) 및 南豊鉉(1997ㄴ/2000)에서도 전문에 대한 해석과 풀이를 한 바 있다. 이 문서는 고려 전기의 地方 및 사찰의 운영 형태와 제도 등을 살피는 데에도 긴요한 자료인 까닭에 국사학계에서 武田幸南(1962)과 許興植(1988), 申虎澈(1994)에 이어 노명호 外(2000) 등에서 판독 작업을 포함하여 관련 사안들에 대한 논의 및 현대어 번역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문서에 쓰인 이두에 대한 주해 및 연구로는 小倉進平(1929)을 비롯하여 이승재(1992)와 徐鍾學(1995) 등이 있으며, 梁柱東(1942)에서도 향가를 해독하는 데 고증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고려 시대의 사회와 경제 및 불교사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 문서를 활용해 왔음은 물론

3) 문서를 구성하는 필수조건을 發給者, 受取者, 목적 및 내용이라고 보면, 이 形止記는 엄밀히 말하여 문서가 아니라 기록류에 속한다.

이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국어학자를 비롯해 여러 방면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異體字와 俗字들이 많아 판독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부 이두에 대해서는 형태론적인 논증을 좀더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漢字語 및 개별 漢字의 용법과 의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행 '知京山府事任若木郡'의 '任'을 그 앞에 나온 '知京山府事'에서의 '知'의 용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붙여 해석한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논자들이 본 바와 같이 '任 若木郡'으로 떼어 놓고 '知京山府事의 관할 구역인 若木郡'(홍기문 1957: 323) 또는 '知京山府事가 맡고 있는 若木郡'(노명호 외 2000: 480) 정도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任內라는 단어의 용례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12행의 '……議出納……' 역시 '……議를 出納……'으로 풀이한 것이 옳다고 본다. 出納이 한 단어로 굳혀져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2차 자료이긴 하나, 고려 문서를 전재한 자료들에서 첫머리에 典議라는 표현을 적잖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행과 16행 중의 '准受'를 '隹受'로 판독하고 이것을 오자로 보기도 하고 이표기로 본 견해[4]도 있으나 대체로 '准受'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准受令是遣在如中'는 문맥에 의존하여 단순히 '주었다' 정도로 풀이하기보다는 '정확히 받도록 하여 놓고 있던 중'(南豊鉉 2000: 525) 정도가 원래의 의미를 살려 현대어로 옮겼다는 관점에서 좀더 나은 번역이라 생각한다.

5행의 마지막 자 '上'과 6행의 첫 자 '國'을 붙여서 한 단어로 해석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서에서 두 군데 別行을 하였는데, 別行의 대상자가 모두 '國'임을 간과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上을 부사어로 해석하여 '위로는 나라가 ……'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4) 鮎貝房之進(1934ㄴ: 上篇82, 1972: 508) 및 노명호 외(2000: 475).

무난하고, 설혹 동사로 해석하더라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上國을 한 단어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犯由(15행)에 대하여는 좀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또는 '약속 또는 기한을 어겼다'라든가, '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하다' 등으로 풀이하기도 하나 문맥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李和開國功臣錄券(1392년)에 쓰인 '犯斤由爲置有亦'(43행, 108행)의 용례이다. 이 경우에 犯斤은 고유어 표기이고 由는 한자어로 쓰여, '다음에 행하기로 하였으나'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朴盛鍾 2006ㄱ: 51, 59).

이 形止記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두자를 일반 한자로 오독한 대표적인 예는 13행 '十一月六日元伯士'의 '元'이다. 이것은 신라 시대부터 쓰였고 '비릇'으로 읽히는 이두자로서 후대에는 元叱로 쓰이다가 始叱로 사용되었다(南豊鉉 1975). 30-31행의 '順可只而今良中' 역시 고려 시대의 또 다른 용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順音可의 용례에 비추어 '順可只而今良中'로 나누어 읽어야 할 것이다(李丞宰 1992: 29-30). 다만, 而今을 한 단어로 처리하지 않고 떨어뜨려 해석할 소지가 다소 남아 있다.

이 形止記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두토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는 좀더 면밀히 분석 고찰할 대상들이 많다. 먼저 판독과 관련하여 살펴 볼 대상은 14행의 𥫱와 30행의 叱이다. 전자는 '…了令𥫱遣…'에 쓰인 자로서 이것을 聞으로 판독한 경우가 있으나, 고려대장경에도 유사한 이체자가 쓰인 점을 감안해 볼 때 齊로 판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叱은 '…邀是白內□乎亦在弥…'라는 문구에 쓰인 □의 판독자로서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두토로 보기 어려워 착오로 인하여 끼워 들어간 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李丞宰 1992: 29).

이 形止記 안의 이두 용례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 爲- 뒤에 연결어미를 생략한 표기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이다. 동사 爲- 뒤에 따르는 연결어미 -遣(-고), -良(-

아/어/야)를 생략한 용법은 한문 원문이 이두문 앞에 제시된 大明律直解에서 때때로 발견되지만 문서에서는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지기에는 여러 번 사용되었다. '勸善爲#(9행), 不得爲#(15행), 勸爲#(15행), 計會爲#(17행), 石運已畢爲#(18행), 仍請爲#(19행)'가 그 예이다.

둘째, 이두자 在에 대한 형태 분석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동명사 어미가 통합된 표기인지의 여부를 비롯하여, 문법적 기능이 선어말어미로서 시상형태소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본동사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보조동사로 보아야 할지를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의 경우 동명사 어미가 통합된 '견'으로 읽히지만, '爲在乎'(26행, 49행)의 경우엔 그렇게 해독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邀是白內□乎亦在弥…'(30행)은 물론이고 '…事亦在乙…'(12행), '…事亦在等以…'(29행), '…事亦在.'(49행) 등에서의 이두자 在는 본동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과 분명 다른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용례도 적잖다. '爲在乎'(26행, 49행) 및 '付置有在等以'(24행)에서의 在, 그리고 '爲去在乙'(8행)의 在의 용법과 기능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 용례는 '令是遣在如中'(10행, 16-17행)이다. 在가 연결어미 -遣(-고) 뒤에 통합된 것인데, 이러한 용례는 조선 초기 이두에서도 때때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모두 묶어 하나의 틀과 잣대로써 분석하여야 할지, 아니면 동일한 이두자라 하더라도 기능과 의미를 달리 하는 것으로 나누어 고찰할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런 현상을 설명할 일반언어학적 이론을 개발하여 그에 의거하여 해석할지를 좀더 숙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두자 內의 不讀字 처리 여부의 문제가 남아 있다. '審是內乎矣'(20행)과 '令是白內乎矣'(27-28행) 등에서의 內는 읽지 않아도 되는 字 즉, 일종의 不讀字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爲內弥'(19행)의 존재는 '爲白弥'(29-30행)의 존재와 관련하여 살펴 볼 때 앞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 內 자를 모두 先行字를 새겨 읽으라는

指定文字로 처리하기도 하나(徐鍾學 1995), 모든 예들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루기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이 밖에도 '念丁'(19행)의 형태론적인 분석, 그리고 '成是不得爲-'(8행, 14-15행)의 통사 구조, '了兮'(14행)에서 각각의 이두자들에 대한 분석과 고찰 등이 과제로 남는다.

## 2.2. 修禪社乃老宣傳消息(松廣寺奴婢文書)(1281년)

이 문서는 전라남도 순천의 松廣寺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편적인 문서로서 분량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의 특성 및 종류에 대하여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초서 판독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면이 많았다. 즉, 여러 번 반복 출현하고 있는 동일한 자(2, 3, 4, 6, 8, 12행)에 대한 판독을 주로 '事'와 '敎'로 달리 하였던 데에서 문서의 성격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문서를 가리켜 흔히 奴婢文書로 일컫기도 하고, 奴婢帖, 또는 立案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문제가 된 草書字는 敎가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을 事로 판독하게 되면 제2행 '修禪社主乃老所志事矣'에서 마지막 자 '矣'를 한문에서의 종결사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첫머리에서 이러한 용법을 찾기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마지막 어구 역시 '令是良於爲事'(12행)가 되어 문장의 結尾 형식에 어긋나고, 전반적으로 문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서자를 敎로 판독하고, 이에 따라 이 문서가 修禪社의 社主인 乃老가 올린 所志의 내용에 대하여 그것을 허락하는 임금의 敎示 또는 下命을 左承旨가 작성 서명하여 내리는 宣傳消息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노명호 外 2000: 18). 所志의 내용은 乃老가 生父로부터 물려 받은 奴 巾三과 그 所生을 修禪社의 丹本大藏寶에 예속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문서의 종류와 성격에 다소 혼란을 빚게 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는 문장 구성 자체가 느슨하고 엄격하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官府文書들은 어떤 일에 대한 시행 또는 조처를 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수된 문서들의 受領日時를 기재하고 그 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轉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의 경우엔 제2행 '去甲寅年分……'부터 접수한 所志의 내용을 전재하고 있다. 그런데, 제11행 '令是白去乎在等以'까지는 所志를 그대로 옮기고 있으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所志의 結句들, 예컨대 '……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 謹言'과 같은 문구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所志의 전재가 끝난 부분을 明示하지 않은 채 '爭望爲行隅有去等……'으로 시작하는 임금의 敎示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문서가 노비를 許與 또는 移屬하면서 작성한 문서인지, 노비 移屬을 허락한 문서인지가 다소 애매하게 된 것이라 본다.

판독 과정에서 탈루된 자가 하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제10행 '本社安邀爲乎丹本大藏宝良中'에서 爲와 乎 사이에 들어갈 白 자가 누락되었다. 爲와 乎 사이의 간격이 넓을 뿐만 아니라, 11행 '…爭望爲行隅…'와 12행 첫부분 '禁止爲遣…' 등과 대비해 보면 그 사이에 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겸양법의 선어말어미 白이 들어가야 하는 문맥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면밀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바로 왼쪽 행에 쓰인 '令是白去乎……'의 白 자와 자형이 다른 것이 흠이긴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초서로 빨리 쓰는 과정에서 적잖이 보이는 자형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문서에 대한 판독과 연구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사학계와 국어학계의 몇 분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국어학계의 연구로서는 南豊鉉(1974ㄴ)과 洪淳鐸(1976)이 있는데, 이들은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 방면의 연구사에서 새로운 경향을 뚜렷이 선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朴盛鍾(2006ㄴ)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연구 경향은 한마디로 고문서를 직접 들여다 보고 앞뒤 문맥과 문서 전체의 내용을 분

명히 파악하면서 이두 용례를 추출하고 그에 대해 문법 기능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일부 국어학도들이 흔히 고문서 이두에 대하여는 활자화된 것들에 의존하고, 문서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吏讀字와 吏讀吐가 쓰인 부분만을 떼어 인용하면서 손쉽게 연구하려는 경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숲을 보지 않고 관심 있는 나무만을 떼어 고찰하는 관행에 대한 警鐘을 울렸다고 평가한다. 새로운 연구 방식은 고문서 이두 연구의 제4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이후 더욱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문서 전문에 대한 판독은 물론 그 안에 쓰인 한자어와 이두들을 상세히 풀이하고 현대어로 번역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 2.3. 長城監務關字(1407년)

이 문서는 전라도 長城의 白巖寺(현재 白羊寺)에서 보관 또는 轉寫되어 전해 오다가 『朝鮮寺刹史料』 上卷(1911년)에 수록된 3점의 고문서 중의 하나이다. 3점 모두 官府文書인데, 다른 2점은 고려 시대의 帖이고, 이 문서는 조선 초인 1407년에 전라도 長城의 監務官이 都觀察黜陟使의 關에 의거하여 白巖寺에 보낸 關이다.[5] 이 문서의 내용은 白巖寺에 있던 慈恩宗 소속의 승려들로 하여금 다른 절인 資福寺로 옮겨 갈 것을 命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朝鮮寺刹史料』 이후에 鮎貝房之進(1934)에서 상세히 다루어졌으며, 『吏讀集成』(1937)에도 수록되었는데 誤字 및 脫字가 더러 눈에 띄므로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홍기문(1957)에서 현대어 번역을 덧붙여 풀이하였으며, 吳昌命(1995ㄷ)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李喆洙(1997)에서는 『朝鮮寺刹史料』에 수록된 3점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5) 문서의 명칭은 노명호 外(2000)에서와 같이 長城監務關으로 매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나, 편의상 종래의 관습에 따른다.

세밀한 분석과 풀이를 하였다. 그리고, 노명호 外(2000)과 朴盛鍾(2006ㄱ)에서도 알기 쉽게 소개해 놓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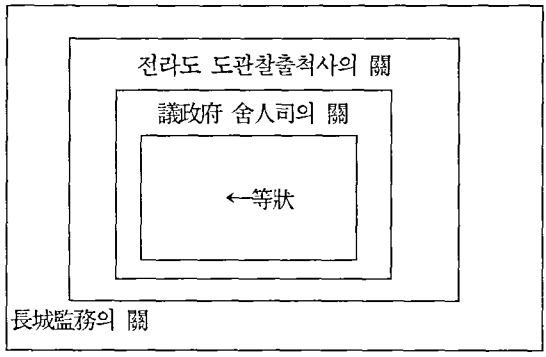
원문서도 아닌 이 문서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까닭은 官府文書의 한 표본으로서 문서의 行移 과정을 이해하고, 시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들을 어떻게 轉載하는가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이해된다. 첫 단계로, 白巖寺를 重刱하기도 한 固城李氏 집안의 자손들이 절을 점거한 慈恩宗 승려들을 물러나게 해 줄 것을 議政府에 等狀으로 청원하였다. 둘째, 等狀을 접수한 議政府에서는 王의 교시 즉, 원문 중의 判下에 의거하여 舍人司에서 전라도에 關을 보냈다. 셋째, 議政府 舍人司의 關에 의거하여 전라도 도관찰출척사는 長城監務官에게 慈恩宗 승려들을 다른 절로 옮겨가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關을 내려 보냈다. 넷째, 전라도 도관찰출척사의 關을 접수한 長城監務官은 그 지시에 따라 白巖寺의 三綱들에게 절을 옮겨 갈 것을 命하는 내용의 關을 보냈는데, 이 때의 關이 바로 이 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 문서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라도 도관찰출척사의 關 : 2행[6] 今月初…… ~ 15행 ……由報向事
② 議政府 舍人司의 關 : 3행 去八月…… ~ 14행 ……移接向事
③ 議政府에 올린 等狀 : 4행 矣徒段…… ~ 12-13행 ……依舊香火

그리고, 이 문서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행 일련번호는 『朝鮮寺刹史料』에서의 行數에 따른다.




이 문서는 『朝鮮寺刹史料』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宣德七年壬子四月初八日議政府關字傳書'라는 문구를 첫머리에 덧붙였는데, 이것은 1432년(世宗 14)에 議政府의 關字 즉, 官文書를 옮겨 적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발급 관아는 議政府가 아니라 長城監務官임은 물론이다.

## 2.4. 正倉院藏 第二新羅帳籍

일본 正倉院에서 나온 新羅帳籍 斷片들은 1934년에 조사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1950년대에 소개되었고 다른 하나는 1976년에 발간한 『正倉院の金工』(宮內廳正倉院事務所 編, 日本經濟新聞社)을 통해 알려졌다. 이 중 전자를 가리켜 第一帳籍이라 하고, 후자는 第二帳籍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第二帳籍에 대하여 '文書'라 부르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자면 문서라고 하기 어렵다. 南豊鉉(2000)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래 발표했던 『美術資料』 19(국립중앙박물관, 1976)에서는 '第二新羅帳籍'이라 칭했던 것을 '新羅出納帳'으로 바꾸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관례에 따라 전자로 호칭한다.

이 帳籍 斷片에 대한 국어학계의 연구물로는 南豊鉉(1976ㄴ)과 權仁瀚(2007)이 있다. 낱장인 데다가 기재된 분량도 많지 않으나, 자형의 판

독을 비롯하여 지명 표기 여부와 그 해독 등 몇 가지 점에서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두토 역시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면의 이두 표기 '汚去如'의 去에 대하여 南豊鉉(1976ㄴ)에서는 확인법 어미로 보고 있는 데 대하여 權仁瀚(2007)에서는 이두가 아니라 한문 문법적 요소로 파악하여 완료상을 표시하는 語助辭 정도로 보고 있다. 또한 汚의 의미에 관해서도 전자는 '목록에서 지웠다'라는 뜻에 가깝다고 본 반면, 후자는 '더럽히다'로 보고 있는 등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이 장적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는 까닭은 특히 權仁瀚(2007)에서 보여 준 새로운 연구 방식과 태도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 장적 前面 欄上의 첫 자에 대하여 權仁瀚(2007)은 신라 俗字로서 土豹[스라소니] 또는 狐[여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것은 주로 고대 木簡에서의 유사한 용례들과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貢物들 중 '-尾'를 가진 것들에 대한 고찰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적에 쓰인 자형들 중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들에 대하여 판독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中國 唐代에 쓰인 자형들과 일일이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국내의 고대 관련 자료들이 빈곤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말하자면 국내 자료들에 대한 해독과 분석을 위해 漢字文化圈 내지 東아시아문화권이라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라 하겠다.

## 3. 古文書 吏讀 연구의 課題 및 展望

### 3.1. 原資料에의 접근과 기본 工具의 마련

古文書와 그 안에 쓰인 吏讀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문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서는 총체

적인 언어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 전체에 대한 조망과 식견 없이 그 안의 片鱗들만을 들여다 본다면 적확한 분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서의 작성 배경과 목적, 작성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내용을 담는 문서의 형식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吏讀文 전체를 해독하는 작업 없이 '단편적으로 吏讀形態의 기능을 논하는 것은 砂上樓閣이 될 수 밖에 없을 것'(南豊鉉 2000: 5)이다.

연구자들은 크든 작든 자기의 주관적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들만을 떼어 들여다 보는 경향이 있다. 이두에 대한 국어학계 연구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던 듯하다. 吏讀字들을 중심으로 앞뒤 몇 字만을 떼어내어 살피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듯하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지어는 활자화된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하여 이두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킨 경우 역시 적잖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연구 태도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로는 점차 사라졌다고 하겠다.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와 松廣寺奴婢文書에 대한 국어학계 연구물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1528년에 母親이 長子에게 奉祀條로 노비와 전답을 허여한 문서에 대한 연구물인 崔範勳(1980) 역시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한 예이다. 비록 간략한 개별문서 한 점을 대상으로 하고 또 吏讀字와 吏讀吐에 대하여 새로운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고문서를 활용하여 이두에 대해 연구할 경우엔 대상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解讀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 내용을 현대어로 옮기는 일이 요긴한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말하자면 대상 언어(object language) 吏讀文을 記述 언어(meta language)인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논문이나 저서에 직접 현대어 번역문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고문서 이두 연구를 위해서는 이상적인 방법에 속한다 하겠다. 근자엔 국어학 이외 분야 연구자들도 이두문을 현대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곤 한다. 鄭肯植(2006)이 그 중의 한 예이다.

고문서 이두를 살피기 위해서는 書體와 草書에 밝아야 한다. 남이 탈

초해 준 자료를 원자료와의 대비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일은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1981년)은 한국 古文書學史에서 큰 劃을 긋기에 충분한 업적이다. 玉에도 티가 있듯이 이 책에서 어쩌다가 그릇 脫草된 字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吏讀字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松廣寺奴婢文書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脫草字 하나의 차이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빚어내기도 한다.

## 3.2. 이론과 실제의 용접

이두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켜켜이 쌓인 層을 제대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러한 난점은 더욱 커진다. 고대와 중세 단계의 이두 형태들을 현대 일반언어학에서의 이론과 용어로써 다루다 보면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잖다. 先語末語尾와 같은 용어가 이두토 분석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분석을 위한 새 틀과 잣대가 요청되므로 일반언어학적 시야에서 이론의 정립과 精緻化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Ramstedt가 즐겨 사용하였던 副動詞 어미(converb)와 같은 용어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두 연구의 難題 중의 하나는 그 讀音이다. 吏讀吐 중에는 15세기 중엽 한글 문헌에서 그 대응 형태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현전하는 이두 讀音資料들은 후대의 것이라서 이른 시기의 이두자들에 대해서는 국어사 지식을 바탕으로 讀音과 형태소를 再構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韓國漢字音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필수적이며, 中國音과의 대응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두가 쓰인 고문서 수효는 실로 엄청나다. 개별 문서마다 이두 목록과 색인을 다 작성하는 일은 語不成說로 들릴 법하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벽이라 사료된다. 시기를 한정하고, 문서의 종류별로, 그리고 중요도를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謄錄을 비롯하여 帳簿 및 臺帳, 그리고 각종 記錄類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좀더 충실한 이두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필요성도 있음은 물론이다.

### 3.3. 學際間 공동 연구와 外延의 확대

앞 章에서 언급한 문서들의 예만 하더라도 全文 내용을 파악하고 이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접 분야의 지식이 요청된다.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漢字語 및 漢字의 용법과 의미를 모르고서는 이두를 뽑아내고 그에 대한 형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制度 및 사회, 法制, 時代史, 書體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 없이는 문서와 이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다. 학제간 연구 또는 공동연구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0-2002)은 이러한 작업의 한 예이다.

第二新羅帳籍의 字形 연구의 예에서 보듯 국내의 자료와 연구물에만 기대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힘들다. 법제 및 행정 용어들(예: 斜給, 題辭, 答通, 行下, 申) 중에는 그 기원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문서의 양식과 형태, 그리고 套式語들에 대해서도 시야를 넓혀 한자문화권 및 東아시아 諸國의 사례들과 대비 고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각종의 한자어들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시기의 각국 특유의 한자어들을 상호 대비한다면 人文學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이다.

## 4. 마무리

본고에서는 한국 고문서의 下限 연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 보고, 각종 고문서 중 吏讀가 사용된 주요한 종류들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 이두 연구 중 그간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주요 문서 4점에 대하여 논란 거리를 중심으로 연구사적인 기술을 하였다. 대상 고문서는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년)와 修禪社乃老宣傳消息(一名 松廣寺奴婢文書)(1281년), 長城監務關字(1407년) 및 正倉院藏 第二新羅帳籍이었다. 시기별로는 신라 시대의 자료 1점, 고려 시대 2점, 조선조 초기의 1점인데, 이 중 마지막 것은 원문서가 아니라 후대에 전재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또한 고문서의 이두를 다루어 온 그간의 연구 방법과 태도를 감안하여 앞으로 이들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해 보았다. 원자료에 충실하게 접근하여 문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그 안에 쓰인 이두에 대해 천착하는 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독해를 위해서 이두의 讀音을 비롯해 이론적 뒷받침이 요청됨과 아울러 각종 이두 자료들에 대한 색인 작업도 필수적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위해서 學際間 연구를 비롯해 연구 시야를 넓히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 이두 연구 중 최근 새롭게 소개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墨書紙片에 대한 것은 본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논의의 진전을 좀더 지켜본 후에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7]

<資料篇 >

7) 본고에서 직접 언급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본고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朴盛鍾(2006ㄴ)에서의 참고문헌을 轉載하고 일부 논저들을 보충하였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 李樹健 編, 영남대 출판부, 1981.
『古文書』, 서울대학교 도서관·奎章閣, 1986~현재.
『古文書』, 영남대학교 박물관.
『古文書集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현재.
『古文書集眞』, 서울대 도서관, 1972.
『古文書集眞』, 김동욱 編,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國寶』(12 書蹩·典籍篇), 千惠鳳 編, 藝耕文化社, 1985.
『大丘月村丹陽禹氏文書』, 金炫榮 編, 한국고문서학회, 1994.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문화재관리국, 1986~현재.
『文化財大觀』, 문화재관리국, 1967~1971.
『文化財大觀』 총8책 (국보편 2책, 보물편 6책),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大學堂, 1986.
『嶺南古文書集成』 I·,II,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吏讀資料選集』, 한국학문헌연구소 編, 아세아문화사, 1975.
『吏讀資料集成』, 金根洙(錦峰學人) 編, 國語國文學資料叢書 3, 서울: 私家版 油印物, 1957.
『吏讀集成』, 朝鮮總督府 中樞院, 1937. (國書刊行會 영인 1975, 國學資料院 영인 1993).
『壬辰狀草』, 이충무공기념사업회 영인, 횃불사, 1976.
『藏書閣所藏謄錄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全北地方의 古文書 (1)』,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3.
『朝鮮古蹟圖譜』, 朝鮮總督府, 1915-1935.
『朝鮮史料集眞』(上),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總督府, 1935.
『朝鮮史料集眞』(下),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總督府, 1936.
『朝鮮史料集眞』(續),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總督府, 1937.
『朝鮮史料集眞解說』 제1집~제3집, 朝鮮史編修會, 朝鮮總督府, 1935.
『朝鮮史料集眞解說』 제4집~제6집, 朝鮮史編修會, 朝鮮總督府, 1936.
『朝鮮史料集眞續解說』 제1집~제3집, 朝鮮史編修會, 朝鮮總督府, 1937.
『朝鮮寺刹史料』(上)(下), 朝鮮總督府, 1911.
『朝鮮時代古文書』, 국립전주박물관, 1993.
『指定文化財解說』, 문화재관리국, 1973.

『朝鮮前期古文書集成－15世紀篇』, 鄭求福 外, 국사편찬위원회, 1997.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노명호 外,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李基白 編著, 제2판; 일지사, 1993 (초판; 1987).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許興植, 아세아문화사, 1976.

<硏究論著篇>

康允浩(1956-9), 「吏讀學史 硏究序說: 近世 西洋人의 吏讀 硏究 (一)~(五)」, 『국어국문학』 15, 17, 18, 19, 20.
姜仁求(1969), 「율곡선생 남매 분재기고」, 『문화재』 4호, 문화재관리국, 15-28.
高正儀(1987),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의 吏讀」, 『울산어문논집』 3, 울산대, 1-18.
高昌錫(2002), 『濟州道古文書硏究』, 제주: 세림.
權仁瀚(2007), 「정창원장 '제이신라문서'의 정해를 위하여」, 『구결연구』 18, 141-171.
金建佑(2007), 「韓國 近代 公文書의 形成과 變化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金根洙(錦峰學人) 編(1957), 『吏讀資料集成』, 國語國文學資料叢書 3, 서울: 私家版 油印物.
金東旭(1967), 「고문서의 양식적 연구 서설(1)」, 『인문과학』 17집, 연세대, 1-19.
金東旭(1968), 「이조고문서의 분류에 대하여-이조 고문서의 양식적 연구서설(2), 『인문과학』 19집, 연세대, 1-49.
金完鎭(1994), 「洪城郡誌에 실려 있는 吏讀文書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의 샘터』, 문경출판사, 588-601.
金鍾塤(1983), 「吏讀表記에 나타난 固有漢字(國字)攷」, 『韓國語 系統論 訓民正音 硏究』, 집문당, 387-412.
金俊榮(1980), 「南宗通記 中의 吏讀에 대한 고찰 - 鄕歌 表記와의 關聯을 中心으로」, 『國語文學』, 국어문학회, 41-53.
金赫(2002), 「藏書閣 所藏 謄錄의 性格」, 『藏書閣所藏謄錄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iii-x.
金炫榮 編(1994), 『大丘月村丹陽禹氏文書』, 한국고문서학회.

南權熙(1994), 「龍天奇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分析」, 『書誌學硏究』 10, 書誌學會, 391-424.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청주고인쇄박물관.
南權熙·呂恩暎(1995), 「忠烈王代 武臣 鄭仁卿의 政案과 功臣錄卷 硏究」, 『古文書硏究』 7, 한국고문서학회, 1-50.
南豊鉉(1974ㄱ), 「古代 國語의 吏讀表記」, 『東洋學』 4, 단국대, 3-14.
南豊鉉(1974ㄴ), 「13世紀 奴婢文書의 吏讀」, 『논문집』 8, 단국대, 9-28.
南豊鉉(1975), 「漢字借用表記法의 「元」字攷」, 『國語學』 3, 국어학회, 151-161.
南豊鉉(1976ㄱ), 「高麗初期의 帖文(慈寂禪師凌雲塔碑陰銘)과 吏讀」, 『국어국문학』 72·73, 321-324.
南豊鉉(1976ㄴ), 「第二 新羅帳籍에 대하여」, 『美術資料』 19, 32-39.
南豊鉉(1979ㄱ), 「16世紀初의 一明文 解讀」, 『檀苑』 11, 단국대, 94-106.
南豊鉉(1979ㄴ), 「丹陽新羅赤城碑의 語學的인 考察」, 『논문집』 13, 단국대, 9-32.
南豊鉉(1986), 「이두·향찰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국어생활』 6, 국어연구소, 40-56.
南豊鉉(1990), 「吏讀·口訣」,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594-604.
南豊鉉(1991ㄱ), 「新羅 華嚴經寫經 造成記에 대한 語學的 考察」, 『東洋學』 21, 단국대, 1-29.
南豊鉉(1991ㄴ), 「吏讀資料」, 『韓國學基礎資料選集 : 中世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41-456.
南豊鉉(1992ㄱ), 「古文書의 吏讀 解讀 : 柳璥功臣錄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5-1(통권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3-108.
南豊鉉(1992ㄴ), 「正倉院 所藏 新羅帳籍의 吏讀 硏究」,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紀念論叢 : 人文·社會科學 篇』, 31-52.
南豊鉉(1993ㄱ), 「新羅時代의 吏讀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지성사, 11-32.
南豊鉉(1993ㄴ), 「新羅時代 吏讀文의 解讀」, 『書誌學報』 9, 한국서지학회, 3-45.
南豊鉉(1994ㄱ), 「高麗 初期의 帖文과 그 吏讀에 대하여 : 醴泉鳴鳳寺 慈寂禪師碑의 陰記의 解讀」, 『古文書硏究』 5, 韓國古文書學會, 1-19.

南豊鉉(1994ㄴ), 「高麗時代 吏讀文 解讀 二題」, 『우리말 연구의 샘터』, 문경출판사, 659-668.
南豊鉉(1995), 「16世紀 古文書의 吏讀文 解讀 二題」, 『韓日語學論叢』, 國學資料院, 395-413.
南豊鉉(1997ㄱ), 「借字表記法과 그 資料」, 『國語史硏究』, 태학사, 65-95쪽.
南豊鉉(1997ㄴ), 「정도사조탑형지기의 해독 -고려시대 이두연구의 일환으로」, 『古文書硏究』 12, 1-50.
南豊鉉(2000), 『吏讀硏究』, 태학사.
노명호 外(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檀國大 國語國文學會(1978), 「南宗通記」, 『國文學論集』 9, 313-323.
檀國大 東洋學硏究所(1992-1996), 『韓國漢字語辭典』 卷 1-4.
都守熙(1975), 「吏讀史 硏究」, 『논문집 : 語文學篇』 2-6,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431-1461.
文叔子(1992ㄱ),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壬亂以前의 分財記」, 『書誌學報』 8, 49-60.
文叔子(1992ㄴ), 「載寧李氏 寧海派 家門의 分財記 分析」, 『清溪史學』 9, 69-137.
文時赫(1934-6), 「吏讀에 對한 考察 (1)~(10)」, 『正音』 1~12, 朝鮮語學硏究會.
朴魯昱(1990), 「朝鮮時代 古文書上의 用語檢討 : 土地·奴婢文記를 中心으로」, 『東方學志』 68, 연세대 국학자료원, 75-121.
朴秉濠(1974ㄱ), 「世宗 21年의 牒呈」, 『法史學硏究』 창간호, 한국법사학회, 127-134.
朴秉濠(1974ㄴ),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朴秉濠(1979), 「高麗末의 奴婢贈與文書와 立案」, 『法思想과 民事法 : 春齋 玄勝鍾博士 華甲紀念』, 141-154..
朴鳳淑(1991),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 『書誌學硏究』 7, 書誌學會, 257-289.
朴盛鍾(1993), 「李和 開國功臣錄券의 吏讀와 그 解讀」, 『古文書硏究』 4, 韓國古文書學會, 1-32.
朴盛鍾(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朴盛鍾(2000), 「栗谷의 土地賣買文記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16·17, 한국고

문서학회, 113-125.
朴盛鍾(2004), 「16세기 고문서 吏讀의 예비적 고찰」, 『古文書硏究』 24, 한국고문서학회, 107-140.(李樹健 외(2004: 389-424)에 윤문 재수록)
朴盛鍾(2005), 「16세기 古文書 吏讀의 종합적 연구」, 『省谷論叢』 36, 성곡학술문화재단, 49-107.
朴盛鍾(2006ㄱ),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 서울대학교출판부.
朴盛鍾(2006ㄴ), 「吏讀 연구 時期別로 본 古文書의 활용」, 『嶺南學』 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63-301.
朴在淵(2002), 『中朝大辭典』, 선문대학교 출판부.
朴天植(1984ㄱ), 「朝鮮建國의 政治勢力 硏究 - 開國功臣 李和錄券을 中心으로」, 『全北史學』 8, 全北大 史學會, 53-126.
朴天植(1984ㄴ), 「開國原從功臣의 檢討ー張寬 開國原從功臣錄券을 中心으로」, 『史學硏究』 38, 韓國史學會, 213-284.
朴天植(1985), 「朝鮮 建國功臣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대학원.
朴喜淑(1987), 「19世紀 末葉의 所志文書의 吏讀 : 江陵郡守 李會源 白活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59·60,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35-151.
裵大溫(1984), 「朝鮮朝 初期의 吏讀助詞 硏究」,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裵大溫(2003), 『歷代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徐鍾學(1995), 『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成鳳鉉(1994), 「1481年 「掌隷院 贖身立案」 文記 檢討」, 『古文書硏究』 5, 韓國古文書學會, 21-37.
申虎澈(1994), 「高麗 顯宗代의 '淨兜寺五層石塔形止記' 註解」, 『李基白先生古稀紀念論叢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569-593.
심우준(1991), 『내사본 판식·고문서투식 연구』, 일지사.
安秉禧(1975), 「古書의 紙背文書에 대하여」, 『圖書館報』 11, 서울대 도서관, 1-10.
安秉禧(1981), 「韓國借字表記法의 形成과 特徵」,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21-635.
安秉禧(1984), 「韓國語 借字表記法의 形成과 特徵」, 『第3回 國際學術會議論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7-3~27-20.
安秉禧(1987), 「語學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 : 古代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91-1079.
安秉禧(1992),『國語史 資料 硏究』, 학연사.
安承俊(1992),「1594年 在京士族의 農業經營文書 : 安氏治家法制」,『書誌學報』8, 37-48.
安承俊(2007),「韓國學中央硏究院의 古文書 調査·整理 現況과 課題」,『古文書硏究』31, 73-106쪽.
梁柱東(1942),『朝鮮古歌硏究』, 博文書館.
梁泰鎭(1984),「錄券에 관한 書誌的 考察」,『國會圖書館報』21-1, 63-69.
吳昌命(1995ㄱ),「朝鮮前期 吏讀의 國語史的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오창명(1995ㄴ),「奴婢賣買文記의 吏讀文과 吏讀 解讀」,『白鹿語文』11집, 백록어문학회, 7-32.
吳昌命(1995ㄷ),「1407년「長城監務關字」의 吏讀文 解讀」,『古文書硏究』7, 51-68.
吳昌命(2004),「제주도 고문서의 이두문과 이두 연구-16세기 이두문을 중심으로」,『耽羅文化』2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81-99.
尹善泰(1997),「正倉院 所藏「佐波理加盤附屬文書」의 新考察」,『國史館論叢』74, 국사편찬위원회, 295-333.
李基白 編著(1993),『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제2판; 일지사 (초판; 1987).
李相揆(1984),「15世紀 慶北地域 古文書의 吏讀 : 格語尾를 중심으로」,『牧泉兪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449-462.
이수건 외(2004),『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대우학술총서 571, 아카넷.
이수건(2006),「古文書의 조사·정리와 史料的 가치」,『嶺南學』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7-37.
李崇寧(1976),「「이두사전」書評 : 신중·완벽한 資料의 蒐集」,『新東亞』6월호.
李丞宰(1992),『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李榮薰(1991),「<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考」,『古文書硏究』1, 韓國古文書學會, 1-17.
이욱(2007),「韓國國學振興院의 古文書 수집·정리의 실제와 과제」,『고문서연구』31, 49-72.
李喆洙(1997),「長城 白巖寺帖文의 吏讀에 대하여」,『한국학연구』8, 인하대학교, 1-72.

任昌淳(1971),「松廣寺의 高麗文書」,『白山學報』11, 35-51쪽.
張東翼(1985),「麗末鮮初 田畓·奴婢관계 古文書 硏究」,『嶠南史學』創刊號, 145-164.
장세경(2001),『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장지영·장세경(1976),『이두사전』, 정음사.
전경목(2005),「고문서학 연구 방법론과 활성화 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과 연계하여」,『정신문화연구』제29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9-239.
전경목 외(2006),『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儒胥必知』, 사계절.
鄭景柱 編譯(1994),『東下面古文書』, 海雲臺區廳.
鄭求福 外(1997),『朝鮮前期古文書集成 - 15世紀篇』, 국사편찬위원회.
鄭求福(1991),「金務의 分財記(1429)에 관한 硏究」,『古文書硏究』1, 한국고문서학회, 19-73.
鄭求福(1993),「1406년 曺恰의 辭令狀에 대하여」,『學藝誌』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10.
鄭求福(2002),『古文書와 兩班社會』, 一潮閣.
鄭肯植(2002),『韓國近代法史攷』, 博英社.
鄭肯植(2006),「16世紀 財産相續의 한 실례-1579년 權社 妻 鄭氏 許與文記의 분석」,『서울대학교 法學』47-4(통권 141), 268-302.
鄭在永(1998),「大韓帝國 時期 西洋人의 吏讀 硏究」,『韓國文化』2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51-84.
趙成都 역주(1973),『壬辰狀草』, 同元社.
千素英(1991),「借字表記 硏究史」,『畿甸語文學』6집,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1-60.
千惠鳳(1972ㄱ),「朝鮮定宗下賜의 趙溫定社功臣錄券」,『國學資料』創刊號, 문화재관리국 藏書閣, 6-8.
千惠鳳(1972ㄴ),「朝鮮太祖親筆賜給의 淑愼翁主家垈文書」,『國學資料』2, 문화재관리국 藏書閣, 1-6.
千惠鳳(1973),「貴重圖書解題: 周易·詩·書淺見錄」,『國學資料』10, 문화재관리국 藏書閣, 1-4.
千惠鳳(1984),「金天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考察」,『한국비블리아』6.(『韓國

書誌學硏究』에 재수록).
千惠鳳(1988), 「義安伯李和 開國功臣錄卷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3, 書誌學會, 25-67.
千惠鳳(1991), 『韓國書誌學硏究』, 서울: 삼성출판사.
千惠鳳(1993), 「河合文庫 韓國典籍」, 『泰東古典硏究』 10, 翰林大 泰東古典硏究所, 933-956.
崔範勳(1980), 「高林君配位愼夫人明文解讀」 『藏菴池憲英先生 古稀紀念論叢』, 형설출판사, 199-208.
崔範勳(1986), 「南宗通記의 吏讀에 대하여」, 『경어문학』 7, 京畿大 국어국문학회, 149-162.
崔範勳(1987), 「原從功臣錄券의 吏讀에 대하여」, 『이정탁회갑기념논총』.
최성기(1957), 「14세기 <공신록권>을 중심한 조선활자문화의 고찰」, 『문화유산』 3, 41-57.
崔淳姬(1991-2), 「載寧李氏 寧海派 文記考(上)－朝鮮時代 相續制度資料論究」, 『書誌學報』 4, 25-61.
최순희(1993), 「商山金氏 分財記 小考－成化拾陸年 貳月拾參日 同腹和會文記를 中心하여」, 『泰東古典硏究』 10, 翰林大 泰東古典硏究所, 907-931.
崔承熙(1989), 『韓國古文書硏究』, 증보판; 서울: 지식산업사 (초판: 1981).
崔承熙(2006), 「朝鮮時代 古文書와 史料價値」, 『조선시대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조선시대사학회 창립10주년기념 학술강연집, 조선시대사학회, 17-30.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0), 『원문·역주 新補受敎輯錄』, 청년사.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1), 『원문·역주 受敎輯錄』, 청년사.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2), 『원문·역주 各司受敎』, 청년사.
韓相俊·張東翼(1982), 「安東地方에 전래된 高麗 古文書 七例 檢討」, 『論文集』 33, 경북대, 53-62.
許興植(1982), 「1262년 尙書都官貼의 분석 (상),(하)」, 『韓國學報』 27, 29, 일지사, 20-49, 55-86.
許興植(1988), 『한국의 古文書』, 민음사.
홍기문(1957),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洪淳鐸(1974),『吏讀硏究』, 光文출판사.
洪淳鐸(1976),「松廣寺 圓悟國師 奴婢帖」,『湖南文化硏究』 8, 125-142.
홍은진(1998),「求禮 文化柳氏家의 한글所志에 대하여」,『古文書硏究』 13, 111-143.
홍은진(1999),「조선 후기 한글 고문서의 양식」,『古文書硏究』 16, 57-89.
黃壽永(1979),「新羅 白紙墨書 華嚴經」,『美術資料』 24, 국립중앙박물관, 1-9.

岡倉由三郎(1893),「吏道,諺文考」,『東洋學芸雜誌』 143-144 雜錄, 432-438頁.
金澤庄三郎(1918),「吏讀の硏究」,『朝鮮彙報』 4月號, 71-99頁.
金澤庄三郎(1932),『新羅の片假字』, 金澤博士還曆祝賀會.
金澤庄三郎(1936),「吏讀雜考」,『史學雜誌』 47編 2號, 143-178頁.(成進文化社 編(1976),『韓國學硏究叢書』 제9집에 영인 수록).
旗田巍(1970),「新羅・高麗の田券」,『史學雜誌』 79編 3號, 295-326頁.
稻葉岩吉(1931),「朝鮮吏文の由來(麗末より鮮初に及びて)」,『朝鮮』 195, 85-121頁.
藤本幸夫(1971),「河合文書の硏究 : 文書形式·吏讀·俗語を中心として」,『朝鮮學報』 60, 119-148頁..
武田幸男(1962),「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の硏究」(I),『朝鮮學報』 25, 23-70頁.
白鳥庫吉(1897),「答問(吏道·言文についての問答)」,『史學雜誌』 8-1, 97-108頁.
白鳥庫吉(1901),「再び朝鮮の古語に就いて」,『言語學雜誌』 2-1, 13-32頁.
小田幾五郎 著, 栗田英二 譯註(2005),『象胥紀聞 - 對馬島通事가 본 18世紀 韓半島文化』, 대구대학교인문과학연구총서 16, 이회문화사.
小田省吾(1934),「李朝太祖の親製親筆と稱せられる古文書に就いて : 淑愼翁主家垈賜給文書を紹介す」,『靑丘學叢』 17, 197-206頁.
小倉進平(1929),『鄕歌及び吏讀の硏究』, 京城帝大.
小倉進平(1936),「鄕歌·吏讀の問題を繞りて」,『史學雜誌』 47-5.
小倉進平 著, 河野六郎 補注(1964),『增訂補注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前間恭作(1926),「若木石塔記の解讀」『東洋學報』 15卷 3號, 363-383頁.
鮎具房之進(1934ㄱ)「俗字.俗訓字.俗音字攷」,『雜攷』 3輯.
鮎具房之進(1934ㄴ),「俗文攷」,『雜攷』 6輯(上,下).
鮎具房之進(1955-57),「借字攷 (Ⅰ), (Ⅱ), (Ⅲ)」,『朝鮮學報』 7,8,.9.

鮎貝房之進(1972), 『雜攷 : 俗字攷·俗文攷·借字攷』, 東京: 國書刊行會.
鄭光·北鄕照夫(2006), 『朝鮮吏讀辭典』, 東京: ペン·エンタープライズ.
朝鮮經濟硏究所 編(1934), 『朝鮮漢字部畫索引』, 京城: 朝鮮經濟硏究所.
朝鮮總督府(1911), 「吐に用ュル漢字一覽表」, 『朝鮮總督府 月報』 12月號.
中村完(1976), 「史的名辭 「吏讀」の槪念とその意識につぃて」, 『朝鮮學報』 78, 21-44.

Jean Mabillon 著, 宮松浩憲 譯(2000), 『ヨーロパ中世古文書學』, 九州大學出版會.(原著 2판 1709년).
체사레 파올리 지음, 자코모 바스카페 엮음, 김정하 옮김(2004), 『서양 고문서학 개론』, 아카넷.
모리스 꾸랑 原著, 李姬載 譯(1994), 『韓國書誌』, 수정번역판; 일조각.

(210-701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E-mail: psjpsj-2@hanmail.net
접수일자: 2008. 05. 22.
게재결정: 2008. 07. 17.

# Retrospect and prospect of Scholarly Study on *Idu* in Korean old documents

Park, Seong-jong

Most scholars are likely to mean Korean old documents by those before the Gabo Reform of 1894. At this time a great change was undergone in the standardization and regulations for the official documents such as euian(議案) and various government documents. But some prefer to say that Korean old documents has persisted until 1910 rather than the Gabo Reform of 1894, because no considerable actual changes of the patterns or styles occurred in Korean documents during the period from 1894 to the Japan invasion to Korea of 1910. This paper roughly illustrates what the new standardization and regulations for the official documents at the Gabo Reform of 1894 were.

The total of all the Korean old documents before 1894 is estimated about at 5 million, which includes not only the documents opened in public but also unopened those which are still preserved in various families and the relevant organizations. Idu has been written in some types of Korean old documents. Further more idu has also been found in many other recordings such as the copies of official documents and the various registers.

This paper aims to show a sketch of scholarly arguments and disagreeable viewpoints in handling with idus written in Korean old documents. And the four documents were selected as the discussing samples; a recording paper of five-storied pagoda at the temple Jeongdo-sa(淨兜寺), an official endorsement to the temple Songgwang-sa(松廣寺) for owing slaves of its own, an official document of the local governor Jangseong-gammu(長城監務), and the second piece of Silla(新羅)'s register preserved at Shosoin(正倉院) in Japan. This paper excludes a recording document somewhat damaged and found in a tower at the temple Bulguk-sa(佛國寺) of Kyeongju-si(慶州市).

In order to describe the grammatical morphemes and their exact meanings of idu in the old documents, it is necessary that the whole content of the relevant document be understood. And also we need those scholarly workings; for examples, ascertaining what to read the idu characters in Korean, making index of idus in various materials, making theoretical hypothesis, and having inter-disciplinary co-workshops so on.

Key words : idu, a sketch of idu study, idus written in Korean old documents, Jeongdosaocheungseoktapjoseonghyeongjigi(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Songgwangsanobimunseo(松廣寺奴婢文書), Jangseonggammugwanja(長城監務關字), JeiShilla jangjeok(第二新羅帳籍).